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12 . . . (제 회)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
제출연월일	2012 . .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악의·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11270호, 2012.2.1.공포, 2012.8.2.시행)에서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함(법 제43조의2제3항)

이에 따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의결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한편, ‘11.11.24. 제47회 차관회의에서 「국민불편법령 폐과제(제9차)에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서) 기재란 중 사업주에 관한 알기 어려운 정보(주민등록번호)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안건이 포함됨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서) 중 피신청인(사업주)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2 . .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

고용노동부령 제 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7조의2(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고용노동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중 3명
2.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2명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사람 중 2명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상당하는 경험 또는 사회적 덕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 3명

③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 3 -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의3(위원회의 의결)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첨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제7조의2(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용노동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3명 2.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2명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사람 중 2명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상당하는 경험 또는 사회적 덕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 3명 <p>③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신 설>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 관이 정한다.</p> <p>제7조의3(위원회의 의결) 위원 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	---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사업장명	⑤근무부서	
피신청인	⑥사업장명	⑦사업주 성명	
	⑧사업장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
⑨해고등 발생일			
⑩신청 취지			
⑪신청이유 (별지 작성 가능)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당해고등에 대한 구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